

학생자치회 규정

수지초등학교

2023년 11월 16일 제정

제1조(명칭) 이회는 수지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급자치회)

-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학년도 학급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의장은 학급 회장이 되며 다음 각 사항을 관장하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 1. 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논의 사항의 의결
 - 2. 학급별 부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급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학급자치회 임원은 남녀 구분 없이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해당 학기로 한다.
- ③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 외 각 부서로 하며, 부서의 구성은 학급에 따라 운영한다.
- ④ 학급 회장은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대의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승인
 - 3.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 4.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학생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 ② 각 부는 학습독서부, 문화예술부, 안전부, 환경부, 봉사부 등의 부서를 두고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하고,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 ④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6학년 1인, 5학년 1인)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해당 학기(학기제)로 한다.
- ②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자격 상실)

- ① 학생(전교,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모든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가 결정된 경우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모든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모든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2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인성(생활)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 2.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3. 학생자치회(학급자치회) 임원 선거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칙)

- ①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